

자산포기안내서

사 권 2026하합1261 파산선고
채 무 자 주식회사 미라
파산관재인 변호사 최동욱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환가를 포기할 예정이오니, 채권자들 중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6. 10. 30.까지 파산관재인(02-6334-0817)이나 서울회생법원 제11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환가포기 대상자산

순번	상대방	자산종류	금액(원)	비고
1	주식회사 더한	채권 (임차보증금)	340,500,000	-재무상태표상 금액 기준임 -임차보증금 실제 지급사실 확인되지 않아 회계상 반영해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일자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계약서 기재 금액과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채무자 회사와 대표자가 동일 -상대방 회사 법인파산 중
2	주식회사 더한	채권 (선급금)	7,000,000	-재무상태표상 금액 기준임 -회계상 잔존한 것으로 실제 잔존 채권액은 다를 수 있음(채무자와 상대방 간 금전거래 다수 존재함) -채무자 회사와 대표자가 동일 -상대방 회사 법인파산 중

2. 자산환가포기 이유

주식회사 더한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선급금의 경우 상대방 회사와의 여러 거래들 중 어떤 금전거래가 해당 채권의 발생원인인지 특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¹⁾. 또한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선급금 관련 계약서 등 증빙자료도 부존재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채권들은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상으로만 반영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인 주식회사 더한은 법인과산절차(서울회생법원 2026하합1418호)를 진행 중인데 해당 사건의 경우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없어 채권조사기일을 추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사 해당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환가할 가능성은 사실상 부존재합니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더한은 파산상태인 바 추가적인 추심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은 파산재단의 절차비용 및 재단채권 증가위험만 키우고 파산절차의 신속한 종료를 통한 재단채권자들의 만족시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환가가 포기된 자산의 처리

환가가 포기된 자산은 채무자 주식회사 미라의 자유재산이 되어 주식회사 미라의 청산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끝.

채무자 주식회사 미라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최동욱

* 위 절차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주관 아래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전화번호: 02-6334-0817,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110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곧바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수인의 자금조달능력, 대금지급방법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매각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1) 임차보증금의 경우 계약서 기재 금액과 재무상태표 기재 금액이 500,000원 차이 나는 사정 또한 해당 임차보증금채권이 회계상 반영된 것임을 보여줍니다.